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7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최수진·조정훈·박충권

이종배 · 김민전 · 임이자

김예지 · 최형두 · 구자근

박준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.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,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

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본문 중 "72시간"을 "48시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72시간"을 "48시간"으로, "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"를 "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포동의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체포동의 요청의 절차) ①	제26조(체포동의 요청의 절차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	②
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	
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	
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	
간 이후 <u>72시간</u> 이내에 표결한	<u>4</u> 8시 <u>간</u>
다. 다만, 체포동의안이 <u>72시간</u>	<u>4</u> 8시간-
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	
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	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
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	<u>으로 본다</u> .
<u>한다</u> .	